

호주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I. 들어가며

디지털 사회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오프라인 세상에서 겪지 않았던 디지털 세상에서의 다양한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 일상을 공유하고 나를 표현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온라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폭력은 단순히 일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의 문제이며, 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대응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범죄, 혐오, 따돌림, 차별, 침해, 훼손 등의 온라인 안전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디지털 시대의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호주의 「온라인안전법 2021」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호주 「온라인안전법」 제정의 의미

2021년에 제정된 호주의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¹⁾은 기존 온라인 안전 관련 법률(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을 확장하고 강화한 것으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환경이 진화하고 온라인에서의 위협 요인과 유해 콘텐츠의 유형 등이 변화함에 따라 법률을 재정비한 것이다. 「온라인안전법」은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을 소셜미디어 서비스와 전자 서비스 등을 안전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아동의 온라인 안전’은 안전한 이용 능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왕따 자료(콘텐츠)로부터 호주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은 첫째, 어린이·청소년 등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18세 이상의 성인을 포함한 모든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 ‘사이버 폭력(cyber abuse)’,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이미지(non-consensual intimate image)’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고히 했다는 것, 둘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넓히고 삭제 의무 등 책임을 강화했다는 것, 셋째, 온라인 안전국(장)(e-Safety Commissioner)²⁾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강화함으로써 규제 체계를 일원화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III. 호주 「온라인안전법」의 주요 내용

1) 유해 콘텐츠의 유형 및 판단 기준

「온라인안전법」이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콘텐츠는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괴롭힘, 성인 대상의 사이버 폭력, 혐오스러운 폭력 행위 묘사,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이미지의 공유 등이다. 불법 콘텐츠뿐만 아니라 적법하지만 어린이 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콘텐츠까지 포함한다.

첫째, 호주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왕따)에 노출되고 있고 이러한 괴롭힘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았다. 특히 사이버 괴롭힘은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피하기 어렵고,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전파의 속도가 훨씬 빠르고, 복구 및 회복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며, 가해자도 익명성에 기대어 처벌받지 않아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21A00076>

2) 이하 '온라인안전국'으로 작성함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³⁾ 「온라인안전법」 제6조에 의하면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괴롭힘 자료(material)'란 '합리적인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해당 자료가 특정 호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거나 호주 아동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이다.

둘째, 호주는 온라인 안전이 단지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호주 국민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폭력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온라인안전법」 제7조는 합리적인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해당 온라인 자료가 특정 호주 성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거나, 모든 상황에서 위협적이거나, 괴롭히거나, 불쾌한 경우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셋째, 「온라인안전법」 제8조에 의하면, 합리적인 일반 성인이 특정 자료가 불쾌하다고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① 합리적 성인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성, 품위, 타당성의 기준, ② 해당 자료의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 ③ 해당 자료의 일반적인 성격(의학적, 법적, 과학적 특징을 포함하는지 등)이다.

넷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해당 자료의 대상이 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단 개인적 이미지 등에 대한 동의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이며, 정보에 근거해야 하되 아동이나 동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성인의 동의는 포함되지 않는다(제21조).

마지막으로, 「온라인안전법」은 규제 대상 자료를 '1종 자료(class 1 material)'와 '2종 자료(class 2 material)'로 분류하여 각 조건에 맞게 규제한다. 1종 자료란 등급분류위원회가 등급 거부로 분류한(또는 분류할 가능성이 있는) 영화·출판물·컴퓨터 게임 및 기타 자료를 말한다(제106조). 제2종 자료는 등급분류위원회가 상영 불가·청소년 관람 불가로 분류한(또는 분류할 가능성이 있는) 영화, 1급 및 2급 성인 출판물,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및 기타 자료를 말한다.

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온라인안전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책임을 강조한다. 정부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온라인 안전과 관련한 규칙(Basic Online Safety Expectations)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각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규칙(code)을 제정하여 온라인 안전 관련 정책을 투명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 법률의



대상자인 온라인 산업은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데,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자 메시지 서비스·채팅·온라인 게임 등 관련 전자 서비스, 웹사이트와 인터넷 서비스, 검색 엔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서비스 접근에 사용되는 장비 제조 및 공급 업체와 장비 설치 유지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

온라인서비스 산업의 모든 영역(segments)은 온라인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하는데,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하여 어떻게 신고하고 다룰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고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특히 어린이의 온라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들의 온라인 콘텐츠 접근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감독하는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콘텐츠 및 서비스의 문제가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불평과 이의를 처리해야 한다.

「온라인안전법」 제46조는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 하는 온라인 안전의 핵심은 ① 최종 사용자가 안전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② 합리적 조치의 판단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안전국(장)과 협의하며, ③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폭력, 개인적 이미지, 혐오 폭력을 장려하고 선동하고 가르치고 묘사하는 자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④ 온라인 자료(콘텐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쉬운 방식의 이의제기 시스템을 보장하며, ⑤ 온라인 안전국(장)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서 등을 통해 요청한 내용을 기한 내에 지킬 것 등이다.

³⁾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0, Australia's children, Cat. no. CWS 69, Canberra: AIHW.

호주 의회는 온라인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기구나 협회(온라인안전국이 인정하는)가 온라인 활동과 관련하여 규칙(codes)을 수립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는데, 이 규칙에는 1종 및 2종 자료를 다루는 절차, 콘텐츠 관련 법적 책임을 통지하는 절차, 이용자 서비스 가입 선택 보장 및 절차, 콘텐츠 필터링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솔루션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 안전 인식 제고, 아동의 서비스 이용 통제 방법 제공, 이의제기 절차, 온라인안전국 통지 절차, 최종이용자에게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정보와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의 보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권한

호주의 온라인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온라인안전국이 담당한다. 온라인안전국은 「온라인안전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법과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데, 특히 아동 성 착취물이나 테러와 같은 불법 콘텐츠를 찾아서 삭제하고,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나이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도록 요구한다. 온라인사업자들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자율 규칙에 적절한 안전대책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온라인안전법」 제4조는 온라인안전국의 직무를 규정한다. 온라인안전국의 기본적인 임무는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을 증진하는 것인데, ①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이의제기 시스템 운영, ② 호주 성인 대상 사이버폭력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시스템 운영, ③ 합의되지 않은 개인 이미지 공유에 대한 이의제기 및 거부 시스템 운영, ④ 온라인 콘텐츠 제도(scheme) 운영, ⑤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관련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의 활동 조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안전국은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증진과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장려,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활동 조정, 온라인 안전 관련 정보 수집·분석·해석·보급, 온라인 안전 교육·홍보, 인식 제고 프로그램 지원·장려·수행, 재정 지원, 연구 지원 장려·수행,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조언, 이해관계자와의 협조, 모니터링, 법 준수 장려, 모범 사례 추천, 인터넷서비스에 의해 제공된 자료에 대한 시의성 있고 적절한 대처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제27조).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는 사이버 괴롭힘 등의 부적절한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온라인안전국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온라인안전국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요청서(또는 차단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치의 예로는 해당 자료 접속 도메인 차단, URL 차단, IP주소 차단 등이 있다. 차단요청서 교부와 관련하여 온라인안전국이 절차적 공정성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제95조제3항)에서 볼 수 있듯이 차단 요청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온라인 자료가 호주 공동체에 중대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온라인안전국은 자료의 본질, 해당 자료에 접속할 수 있는 최종이용자의 수, 기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온라인안전법」 제104조는 법 집행이나 이행감시 및 위반 조사, 법원이나 행정심판의 절차·과학·의학·학술 또는 역사 연구 수행이나 지원, 전문 언론인에 의한 공익 뉴스 보도나 시사보도, 공무원의 공무나 직무 수행, 예술작품을 선의로 구성·공연·전시·유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다. 온라인안전국의 요청서 및 통지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경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안전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직전 12개월간 벌금 조항 위반 사유가 2건 이상이고 공동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유발한다고 판단하면 온라인서비스 공급 중단 명령을 연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연방법원은 판단에 따라 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156조~159조).

온라인안전국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기반·교통·지역개발·통신부⁴⁾ 장관이 임명하고, 임기는 5년이며, 호주 통신미디어청⁵⁾의 지원을 받는다. 온라인안전국장은 통신미디어청의 공무원이지만 직무 수행이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고 보호된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의 헌법적 원칙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적용되는 않는다(제233조).

IV. 온라인 안전과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는 최근 온라인 안전을 미성년자인 아동에서 성인 모두로 확대하고 사이버 괴롭힘과 폭력, 온라인 혐오표현 등의 콘텐츠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의 「온라인안전법」은 기존의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 콘텐츠만이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부당하게 겪을 수 있는 사이버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안전국의 권한을 강화하며, 동시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을 부여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 및 정책 접근은 단지 호주만의 사례는 아니다.

2022년 3월 17일 영국 의회에는 「온라인안전법안(Online Safety Bill)」이 발의되었다. 2021년 5월 법안 초안 이후 검토와 수정을 거쳤고, 2022년 6월 현재 위원회 검토(Committee stage) 단계에 있다.⁶⁾ 영국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이용자에게 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법안을 준비하였다. 특히 성착취와 괴롭힘, 자해나 섭식

4)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s

5)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6) <https://bills.parliament.uk/bills/3137>

장애 등 적법하지만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이용자가 테러리즘 등 불법 콘텐츠와 사기 광고 등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이용자 간 서비스(user-to-user service), 검색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 이용자가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플랫폼은 불법 및 유해 콘텐츠에 책임을 갖고 대응해야 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신규제기관인 Ofcom으로 하여금 사업자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다.

영국은 이러한 온라인 안전 관련 규제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자가 체계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한다. 사업자는 부모와 자녀가 유해 콘텐츠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어린이 대상 성착취와 괴롭힘 콘텐츠는 국가범죄국⁷⁾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콘텐츠(일부는 불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성인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규칙과 이행 등을 잘 판단하고 통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저널리즘과 민주적 정치토론의 보호를 위해 뉴스 콘텐츠는 이 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이 공정하지 않게 취급당할 때는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범죄·폭력·괴롭힘 등 다양한 온라인 안전의 문제를 겪고 있고,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장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보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해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는 금지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의하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안 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권리 침해 정보의 삭제요청, 임의의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에 관하여도 명시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구체적인 불법정보의 유형을 열거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0조에 의하면 명예훼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에 관하여 규제한다.

이처럼 호주와 영국이 사이버 괴롭힘과 폭력, 특히 적법하지만 유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음란물,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국가 안보 등 불법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따돌림, 왕따 등의 사이버 괴롭힘이나 동의받지 않은 개인적 이미지, 다양한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 등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

호주와 영국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구분하고, 콘텐츠를 수준에 맞게 분류하며, 사업자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규제기구의 책임도 강화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법정보 금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삭제 요청에 대한 조치 등에 그치고 있다. 물론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온라인 안전 문제 해결의 답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앞으로 더 심각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관련 법률과 제도를 검토하고 논의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안전과 권리 보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과 서비스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발전하고, 온라인 정보는 예전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며, 플랫폼과 콘텐츠 이용을 위해 우리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메타버스 세상을 제대로 즐기기도 전에 메타버스 내 미성년자그룹, 성범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사회가 주는 긍정적인 부분만 누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디지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

7) National Crime Agency